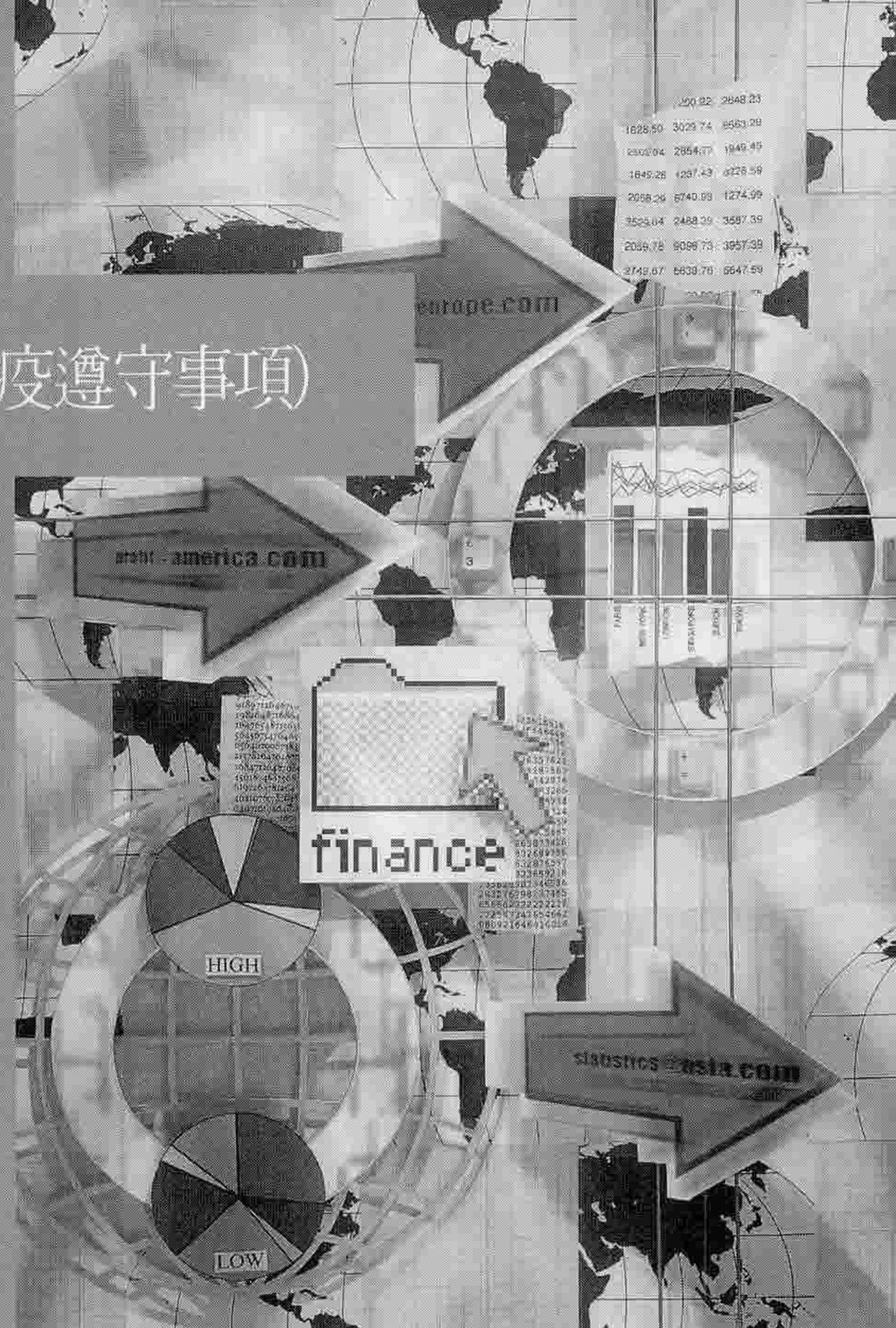


조류인플루엔자(AI), 오리농가 방역 준수사항(防疫遵守事項)



㉘ 가금류농가 AI 차단방역 준수사항

- 1 농장은 인근 가금류농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유리하며, 야생조류가 자주 출몰하는 호수·연못·수로 인근에 가금류농장을 짓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 2 야생조류와 접촉할 기회가 높은 저수지, 하천,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는 야생조류의 분변 오염에 주의해야 한다.
- 3 철새도래지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여행을 자제해야 하며, 특히 철새 등 야생조류가 있는 소하천 등에 낚시 등을 하기 위한 방문을 금지하여 농장으로의 질병 유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 4 농장 출입차량 및 방문객에 대한 통제와 출입시에는 소독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농장 관리인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및 소독실시 기록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질병발생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하여는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 5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 외출 후 농장에 들어갈 때는 소독 및 착용하였던 옷과 신발을 농장전용으로 교체하는 기본적인 방역조치를 생활화해야 한다.
- 6 한 사육지에서 다른 사육지로 이동하여 출입을 할 때 신발을 소독하거나 다른 신발 또는 덧신을 신고 출입하도록 해야 한다
- 7 백신접종주사기, 부리를 자르는 디비킹(부리 자르기), 닭 이동에 사용되는 박스, 트랙터, 경운기 등 타 농장으로부터의 축산기구 반입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
- 8 약품배달은 시키지 말고, 직접 방문 구입하거나 택배를 이용한다.
- 9 일가친척과 인근주민이 가능한 농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농장주 등 농장 근무자들은 다른 농장 방문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및 행사장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10 농가에 근무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외국인 근로자가 같은 국가에서 온 다른 농장 친구·동료와의 접촉할 수 있으므로 소독 등 방역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외국인 근로자 방역지침 참조).

11 농가 인근 인삼밭 등 농지에 계분을 살포할 경우 철새 등 야생조류의 먹이가 있는 계분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계분 살포를 자제하고 계분이 살포된 경우 인삼밭 주변 방문을 금지하고, 계분의 먼지가 축사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추수기에 가금 사육농가 주변 논, 밭 등에 철새 등 야생조류의 먹이(볍씨 등)를 제거하여 야생조류에 의한 질병 유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13 특히, 농장주는 닭·오리 사육농가 방역수첩을 철저히 숙지 및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지침

1 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

1)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확인을 철저히 합시다.

- 첫째 : 신분확인 철저
 - 성명, 여권번호, 가족사항, 출신국가에서의 직업 등 확인
- 둘째 : 국내 타 농장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확인하여 채용 시 방역상 위해가 없는지 확인

2)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합시다.

- 첫째 : 마을회관 등 가족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을 것
- 둘째 : 채용이 성사되면 그 장소에서 소독 등 방역 조치 철저
 - 휴대품을 확인하여 축산물등음식물은 소각·폐기
 - 의복·신발·가방 등 개인용구에 대하여 세

척·소독 등 조치

3) 농장 근무시에는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합시다.

- 첫째 : 농장청결 등 위생과 소독 등 방역, 질병의 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준수사항 교육
- 둘째 : 농장 출입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의복과 신발 착용
- 셋째 : 농장주변 정리 등 업무 수행 후에는 소독 후 축사 출입

4) 외국인 근로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합시다.

- 첫째 : 타 농장 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농장 방문 금지
 - 가급적 전화를 사용토록 권고
- 둘째 : 휴일 등 외출시에는 귀가 후 주요행적을 파악·기록·관리 하고 농장 밖에서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출입
- 셋째 :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친지 등은 시내 등 외부에서 만나도록 조치

2 외국인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자국(自國)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는다.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알, 햄, 소시지, 육포, 치즈 등

2) 농장 근무시 준수사항

- 농장 입구에서 차량 및 사람의 소독을 철저히 한다.
- 축사 출입 전에 반드시 작업복과 장화를 갈아 신고 들어간다.
 - 축사 입구에서 손과 신발을 소독하고, 축사 밖의 장비를 가지고 들어갈 경우 함께 소독한다.
- 축사에서 나올 때 입구에서 손과 신발, 사용 장비를 소독한다.
- 축사입구 소독조는 2일에 한번씩 갈아준다.

- 농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작업복은 2~3일에 한번 이상 세탁하여 착용한다.
- 사료를 적게 먹거나 평소와 달리 이상한 행동을 할 때에는 신속하게 농장주에게 알린다.
- 소독약제 사용은 약품의 희석비율 대로 사용토록 한다.

3) 일과(日課) 후 준수사항

- 타(他) 농장 방문은 금지하고 급한 용무는 가급적 전화를 한다.
- 가족·친구 등을 만날 때에는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한다.
- 외출할 때는 외출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고 외출한다.
- 귀가 즉시 손과 신발을 소독하고 깨끗이 목욕한다.

㉘ 출입차량 세척·소독 유의사항

1 일반사항

계분이나 닭·사료 운반차량 등은 자주 전염병 질병의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에 차량소독은 차단방역에 있어 중요하다.

실제로 최근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바이러스의 전파가 차량과 관련되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효과적인 차량소독과 차단방역 프로그램은 양계업계가 장기적으로 생존하는데 필수적이다. 농장의 차단방역을 위협하는 차량으로는 병아리·성계 운반차량, 집란차량, 사료 운반차량, 폐사체 운반차, 직원차량, 기술자와 서비스요원 차량, 깔짚 운반차량 및 계분 운반차량 등이다.

2 차량소독(車輛消毒) 일반사항

AI 병원체의 유입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가금류 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에 있어 준수하

여야 할 원칙은 아래와 같다.

- 바퀴와 차축을 농장과 농장방문 사이에 세척한다.
- 발판소독조로 신발을 소독하지 않고는 농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 농장에서 제공하는 위생복을 착용한다.
- 최소한 현장의 자체 차단방역 지시를 준수한다.
- 모든 방문이 끝난 후 차량을 세척 소독한다.
- 차량과 모든 오염된 표면을 1차로 세척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이후에 검증된 소독제를 사용한다.
- 표면의 물때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된 제품을 사용한다. 물때는 세척하기 힘들고 많은 세균을 포함하고 보호할 수 있다.
- 일과 후 차량을 세척 소독한다. 모든 장비, 파이프, 바닥판, 덮개, 특히 운전석을 망라한 오염물질과 접촉된 모든 표면을 소독한다. 특히, 전염 가능한 차량이 트럭 내부, 특히 발 딛는 부분을 중점 소독한다.
- 가금류 도축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차량은 출발하기 이전에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3 농장 도착 후 세척(洗滌)·소독(消毒)

차량이 현장에 접근하면 도착 즉시 육안으로 깨끗한지 점검한다. 수송중 차량들이 오염물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바닥판 및 보호덮개를 설치하고, 특히 유기물질이 있을 경우 바퀴와 차축을 AI에 그 효과가 검증된 소독제로 분무한다.

차량 바퀴, 차대, 차량의 몸체를 자동 소독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관련 설비가 동절기에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열선처리 등의 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 자동소독은 소독약이 차량의 모든 부분에 골고루 분무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바퀴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차량내부 특히 발 딛는 부분을 중점 소독한다.

4 차량사용 후의 소독(消毒)

가금이나 깔짚과 접촉하는 차량과 관련 장비(운반대차, 닭 포획기 등)는 다량의 전염성 세균과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가능한 많은 유기물을 제거한 다음 차량 안쪽과 바깥쪽의 병원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살균제를 사용하여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장비들도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한다.

매일 매일 시간을 들여 지속적으로 소독 등을 실시해

야만 이러한 차단방역 대책들이 효과적이고 일관적으로 실행되는지 보장할 수 있다. 확실히 모든 장비들의 기본 디자인은 그것이 효과적으로 세척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하고, 이 점이 새로운 운송수단을 도입하는데 고려될 사항이다. 주된 중점적인 부분은 ① 바퀴, 차축, 차대. 가능하다면 차대의 아래면, ② 트레일러/가금이 적재되는 부분, ③ 어리장과 모듈, ④ 차량의 보호덮개, ⑤ 사료공급 파이프, ⑥ 운반대차의 내부를 고운 입자로 분무 소독하여야 한다.

【표 1】 이동제한지역 닭·오리농장 등 분뇨처리지침

구 분	이동제한기간중	이동제한 해제직전(해제조건)	이동제한 해제 이후
위험지역	발생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일 경과 분변검사 후 농장내 매물하거나, 60일 경과 분변검사 후 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농장 밖 반출, 기록유지 -분뇨차량 세척·소독 -분뇨 임의처리 농장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주간 입식시험 실시 -축사당 닭(6~12주령 산란계 중추) 최소 5수 이상
	예방 살처분 농장 중 양성 판정 농장		
위험지역	기타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제한 해제 후 농장 밖 반출 허용 -분뇨차량 농장 출입시 소독 철저, 기록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뇨차량 농장출입시 소독철저 -오리·닭 구분, 전용차량 출입 자율정착
경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장 외부 반출금지 다만, 닭 분뇨는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경계지역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가능 -주기적 소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제한 해제 후 농장 밖 반출 허용, 단 발생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장 중 양성 판정 농장은 제외 -분뇨차량 농장 출입시 소독 철저, 기록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뇨차량 농장출입시 소독철저 -오리·닭 구분, 전용차량 출입 자율정착
일반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리분뇨는 농장 밖 반출금지, 주기적 소독 닭 분뇨는 가축방역관의 현지 점검 후 반출여부 결정, 기록유지 -육계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산란계는 건조된 경우 반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제한 해제 후 농장 밖 반출 허용 -분뇨차량 농장 출입시 소독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뇨차량 농장출입시 소독철저 -오리·닭 구분, 전용차량 출입 자율정착

【표 2】 이동제한 대상 및 내용

구분	축종	위험지역(3km)	경계지역(10km)
가금	닭	반출·입 금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반출·허용
	오리	반출·입 금지	반출·입 금지 다만, 출하 3일전 관할시험소에 신고하여 검사 후 음성인 경우 지정도축장에 출하 허용
돼지	돼지	오염지역 내·외로의 반출·입 금지 다만, 정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돼지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도축 출하 허용	-
분뇨	공통	농장내 매물 또는 축사내 보관 다만, 산란계의 경우 농장내 이동허용, 농장 밖 반출은 금지	농장 밖 반출금지 다만, 닭의 분뇨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경계지역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가능
사료·깔짚·왕겨	공통	농장 밖 반출금지, 위험지역안 운행 전용차량 이용에 한하여 사료의 반입 허용	깔짚·왕겨는 농장 밖 반출금지, 사료의 경우 소독실시 후 농장내 반입
부화장	닭	폐쇄(부화란 폐기)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부화 및 부화 병아리 반출 허용
	오리	폐쇄(부화란 폐기)	이동제한지역 밖에서 반입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화 및 부화 병아리 반출 허용
도축장	닭	경계지역산 닭만 도축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도축 허용
	오리	경계지역산으로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오리에 한하여 도축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경계지역의 오리에 한하여 도축 허용
종란	닭	폐기 다만, 이동제한 전(前) 생산된 종란은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 후 방역관 지도·감독하에 이동허용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이동 허용
	오리	폐기	폐기
식용란	닭	폐기	예찰결과 이상 없을 경우 식용 허용
	오리	폐기	폐기
출입자	공통	통제초소 및 가금류 농장 출입시 신발 및 손소독 후 통행허용	-
차량	공통	가금류·생산물·사료·동물약품·왕겨 등 운반차량은 차량외부·바닥·바퀴·운전석 등 소독후 통행허용	가금류·생산물·사료·동물약품·왕겨 등 운반차량은 차량외부·바닥·바퀴 소독후 통행허용 다만, 닭·오리 등 감수성 가축의 분뇨운반차량은 통행금지 하되, 경계지역 공동처리장으로 닭의 분뇨운반차량은 소독 후 이동허용
사료공장	원료사료	이동제한(가금용 이외의 사료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생산·유통 허용) ※오염지역의 경우 이동제한조치하고 바이러스 검사결과 양성이거나 가축방역협의회의 협의 결과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폐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생산 및 유통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공통	닭·오리 분뇨로 생산하는 시설 폐기	-